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05
----------	-------

발의연월일 : 2025. 7. 16.

발 의 자 : 박상혁 · 허 영 · 이연희
김주영 · 이해식 · 박용갑
한민수 · 김용만 · 김승원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거주민의 정주, 출퇴근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85조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의3·제38조의4”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38조제1항·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8조의4(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u>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 · 제35조 · 제38조 · 제38조의2 · <u>제38조의3</u> · 제39조 · 제45조 · 제49조 · 제50조 ·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준용규정) ----- ----- <u>제38조</u> <u>의3 · 제38조의4</u> ----- ----- ----- -----.
---	---